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2398 공매대금배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1. ○○도 ○○시장
	2. ○○○○○○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1. 피고 ◯◯도 ◯◯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이 2021. 12. 17. ◯◯시 D 임야 93,688㎡ 중 E의 지분 6분의 1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에게 배분한 각 264,773,700원 중 각 73,665,41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이 2021.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47,330,82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1.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2021. 12. 17. ◯◯시 D 임야 93,688㎡ 중 E의 지분 6분의 1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에게 배분한 각 264,773,700원 중 각 73,665,41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공사가 2021.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47,330,82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과 F 사이의 매매계약 및 F 명의의 근저당권

1) E과 F(2010. 5. 4. 사망하였다. 이하 사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망인'이라 한다)는 2006. 5. 30.경 ◯◯시 D 임야 93,688㎡, G 대 238㎡, H 전 823㎡, I 대 324㎡, J 전 1,081㎡, K 전 605㎡, L 전 377㎡에 관한 E의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1,155,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540,000,000원으로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하였고, 잔금 555,000,000원은 제3자에게 매매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1)]에 망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06. 5. 30.경 계약금 60,000,000원을, 2006. 6. 1.경 중도금 5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6. 2. '근저당권자 망인',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등기원인 2006. 6. 1.자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2. 22. '근저당권자 M',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M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2. 1. 27. N에게, 2018. 4. 24. O에게, 2019. 3. 29.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공매처분 등

1) 피고 시장은 E에 대한 지방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5. 초순경 피고 공사에게 E 소유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2) 피고 공사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합계 656,039,000원에 매각하고, 2021. 11.경 및 12.경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망인의 상속인들인 B, C(피고보조참가인들, 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및 원고에 대한 각 배분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각재산	작성일	B	C	원고
H 중 1/6 지분	2021. 11. 30.	9,663,540원	9,663,540원	
J 중 1/6 지분	2021. 11. 30.	13,127,700원	13,127,700원	

1) 매도인인 E이 이 사건 각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위 잔금 상당액을 제외한 차액은 매수인인 망인이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G 중 1/6 지분	2021. 12. 8.	3,550,000원	3,550,000원	
I 중 1/6 지분	2021. 12. 8.	4,662,145원	4,662,145원	
D 중 1/6 지분	2021. 12. 17.	264,773,700원	264,773,700원	2,669,180원
K 중 1/6 지분	2021. 12. 17.	2,830,625원	2,830,625원	
L 중 1/6 지분	2021. 12. 17.	1,392,290원	1,392,290원	
합계		300,000,000원	300,000,000원	2,669,180원

3) 원고는 2021. 12. 17. 배분금 2,669,180원을 지급받으면서, 2017. 12. 17.자 각 배분계산서(3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참가인들은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2022. 8. 22.경 위 배분계산서에 따른 각 배분금 합계 300,000,000원 중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각 73,665,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226,334,590원을 지급받았다.

라. 관련 민사사건 경과

1) E은 2020. 7.경 참가인들 및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4085)을 제기하였는데, ①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지분이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은 그 매매대금에서 잔금 5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각 50,519,500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공매대금 합계 656,039,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55,000,000원) × 1/2]을 초과하여 받은 배분금[2]을 E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받지 못한 배분금 채권[3]을 양도하여야 하며, ② 원고에 대해서는, M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순차적으로 양수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2) B, C가 실제 배분받은 각 226,334,590원
3) 배분계산서에 따른 B, C의 각 배분금 300,000,000원 중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배분하지 못한 각 73,665,410원에서 각 50,519,500원을 초과한 각 23,145,910원의 배분금 채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2,699,180원을 E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23. 4. 21. '① E은 이 사건 각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차익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1. 5. 24.경 해제되었으므로, E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M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위 채권이 N, O,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M의 E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E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나15963)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피고 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E과 망인 사이의 2006. 6.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2016. 5. 31.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시장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공매대금을 배분함으로 인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분신청한 150,000,000원(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2,669,180원 밖에 배분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147,330,820원(= 150,000,000원 - 2,669,180원)을 더 배분받아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따라서 피고 시장이 2021. 12. 17. ① 이 사건 각 지분 중 ◯◯시 D 임야 93,688㎡에 관한 지분의 공매대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에게 각 264,773,700원을 배분한 처분 중 각 73,665,410원(= 원고가 추가로 배분받아야 할 금액 147,330,820원 ÷ 2) 부분 및 ② 원고의 150,000,000원 배분신청에 대하여 같은 날 2,669,180원만 배분함으로써 147,330,820원의 공매대금배분을 거부한 부분(①, ②를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피고 공단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피고적격이 없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대법원 1997. 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지분의 공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피고 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한 공매처분 및 이와 관련한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바, 결국 위임청인 피고 시장은 피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후순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만으로는 순위 상승에 기한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의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2) 다만,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인 E의 권리불행사, 무자력 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E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참가인들의 E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4)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망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의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E 및 망인 명의로 작성된 처분서(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권도 담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판사 김○○

판사 최○○